

#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 련<br>1546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0년 6월 17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갈등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시장에게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- 시장에게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5항).
- 시장에게 공공갈등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조제6항).

#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항 중 “공동체 회복을 위하여”를 “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안 제18제3항 중 “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여 제3조제5항으로 한다.

안 제18제4항 중 “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”을 “시장은 제5항”으로 하고, “공유하여야 하며”를 “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”로 하여 제3조제6항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| 수정안  |
|--|--|--|
|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br>~ ③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br>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시장은 <u>공동체 회복을 위하여</u>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 |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br>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시장은 <u>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</u>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|
| 제18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| 제18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)<br>③ <u>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</u> 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       | 제3조(시장의 책무)<br>⑤ <u>시장</u> 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<u>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</u> 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<u>공유하여야 하며</u> ,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 ⑥ <u>시장</u> 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<u>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</u> ,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  |

##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, 제5항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|
|---|--|
|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<br><br><p><u>&lt;신 설&gt;</u></p><br><br>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|